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개발제한구역 내 국비를 지원받은 주민지원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조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

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예고('24.12.3~12.23)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

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다른 사업으로 변경 하거나”을 “변경(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다른 사업으로의 변경을 말한다)하거나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7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증감(단, 도로 등 선형시설은 시점·종점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)

2. 사업기간 변경

제23조 중 “2022년 1월 1일”을 “2025년 1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<제415호, 2024.12.31.>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(사업계획의 변경) ① 시· · 도지사 및 시장 등은 국고지 원이 이루어진 사업을 <u>다른 사 업으로 변경 하거나</u> 사업을 폐 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 설>	제17조(사업계획의 변경) ① ----- ----- ----- <u>변경(사업 계획의 변경 또는 다른 사업으 로의 변경을 말한다)</u> 하거나--- -----. <u>다만,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1. <u>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증감</u> <u>(단, 도로 등 선형시설은 시점·</u> <u>중점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</u> <u>해당)</u> 2. <u>사업기간 변경</u>
② ~ ③ (생략) 제23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 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「훈령 ·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」에 따라 <u>2022년 1월 1</u> <u>일</u>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② ~ ③ (생략) 제23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5년 1월 1</u> <u>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